

# 「운영규정」 개정 사전예고

## □ 개정 이유

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‘금품수수 등의 금지’, ‘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’ ‘부정청탁 근절’ 등 부패 공직자 처벌 강화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

## □ 주요 개정 내용

- 민법 제9조, 제13조 개정에 따라 제16조(결격사유) 용어 변경  
‘금치사자와 한정치산자’→‘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’
- 제30조(당연해촉) 사항에 채용절차에서 채용비위로 채용된 자에 대해  
당연 해촉되는 조항 신설

## □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-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### 〈보내실 곳〉

- 전 화 : 02-3700-6343
- 팩 스 : 02-3700-6365
- 이메일 : chlee999@seoulphil.or.kr
- 주 소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관리팀

- ※ 첨부 : 1. 운영규정 신·구 조문 대비표 및 전문 1부.  
2. [서식]서울시립교향악단 규정 제·개정 사전예고 검토의견 1부.